

[후보자등록절차] 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등록신청

•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류명	수량	비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나)
첨부서류	○ 추천서 [정당추천후보자]	1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다)
	○ 후보자추천장 [무소속후보자]	추천인수를 충족하는 대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가)
	○ 주민등록표 초본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한함]	1통	구 · 시 · 읍 · 면 · 동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직계 존 · 비속(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아 중 병역사항 신고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 · 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1통	구 · 시 · 읍 · 면 · 동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병역사항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해당자]	1부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제1호 서식(나)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반드시 “공직자(등) 신고용”으로 발급
	○ 최근 5년간 세금납부 ·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통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차) ☞ 신고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그 증빙서류	1통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가) ☞ 회보서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발행 ☞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그 증빙서류	1통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바)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빠)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기탁금 입금표	1부	기탁금 납입 증빙서류(무통장 입금표 등)
	○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해당자]	1부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관리상 필요서류	○ 사진(5×7cm의 천연색으로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2매	경력방송 · 자료발간 및 언론제공용 ☞ 전자파일 동시 제출
	경력방송원고제출서 [TV, 라디오]	각 2부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나)

- 신청서식 : 다운로드
-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함
- 등 록 처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성명 (한자 :)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6. 직업
 7. 학력
 8.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 인	
신청인	대표자 ○○○ 인	
	(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덧붙임 서류 : (1)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2) 후보자본인승낙서(정당추천 대통령후보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함)
(6)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
(7)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8)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9)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0)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1)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12)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3) 인영신고서
(14) 기탁금 입금표
(15)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 주: 1.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기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